

별첨 1 **사업비 편성기준**

구분	편성기준	집행기준	증빙서류
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제작 인력에 지급되는 직접 인건비 • 신청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※ 법인사업자 대표 인건비는 50%까지 인정 • 원천징수세액, 4대 보험료 등은 제작비로 인정 (단, 고용주 부담금 제외) • 협약기간 내 한하여 소속 제작사 (개인)의 급여기준 따라 실지급액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집행하되 복리후생 성 경비(선물, 경조사 등)는 불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사업비의 70%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(스태프 인건비 우선) • 2025년 최저시급 준수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시간 기준 시급 10,030원/ - 월급(209시간) 기준 2,096,270원 •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인 경우 소득세 등 원천징수(기타 8.8%, 사업 3.3%) 하고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 • 금액 불문 계좌이체 원칙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분증(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크처리) ② 통장사본 ③ 이체확인증(입금확인증) ④ 참여인력 현황표(붙임2 참조) ⑤ 계약서 및 이력서(50만원 초과 시)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125,000원 초과 시)(국세/지방세 2건)
임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해 제작에 소요되는 외부장비, 외부시설 이용료 등 순수 임차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비 : 촬영, 조명, 음향, 녹음, 운반비, 차량임차료 등 - 시설 : 로케이션 섭외비, 녹음·편집시설 임차비 등 ※ 불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가(내부) 시설 및 장비 이용, 사무실 운영(전기요금, 인터넷 사용료 등) - 제작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(장비 구입 및 수리 등) - 당해 제작과 관련되지 않은 임차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액 불문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원칙 •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간, 장비 등 임차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(기타 8.8% 적용)하고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② 사업자등록증(계좌이체 시) ③ 통장사본(계좌이체 시) ④ 세금계산서(계좌이체 시) ⑤ 견적서(30만원 초과 시) ⑥ 거래명세서(30만원 초과 시) ⑦ 계약서(100만원 초과 시) ※ 100만원 이상 시 ⑤, ⑥, ⑦ 필수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125,000원 초과 및 개인 지급 시)
진행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해 제작에 소요되는 진행비 일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모품* 구입비 : 재료비, 행정비품(건전지, 테이프 등) - 기타 진행비 : 식대 및 부식비, 숙박비, 교통비(항공료, 유류대, 주차료 등) 등 진행비 - 수수료 : 회계 검사비용(지원금 3천만원 이상), 이체 수수료, 자료 운송비 등 * 소모품 :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재사용이 불가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액 불문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원칙 • 본 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 시 소명가능 할 경우 사전협의 후 구매 가능 ※ 30만원 이하의 외장하드,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등 • 식대(부식비 포함)는 총사업비의 30% 초과할 수 없음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② 사업자등록증(계좌이체 시) ③ 통장사본(계좌이체 시) ④ 세금계산서(계좌이체 시) ⑤ 견적서(30만원 초과 시) ⑥ 거래명세서(30만원 초과 시) ⑦ 계약서(100만원 초과 시) ※ 100만원 이상 시 ⑤, ⑥, ⑦ 필수 ⑧ 탑승권(항공권 이용 시) ⑨ e-티켓(예약 및 결제정보 포함)

불인정 공통사항

-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(※ 회계정산 수수료 제외)
-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
-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불량 영수증
- 사업비 전용 카드 또는 전용 통장을 통한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
-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
-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
-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진행을 한 경우
- 간이영수증(수기로 작성한 종이영수증), 해외결제(해외직구) 건
- 그밖에 진흥원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주의사항

- 유희 및 생활편의시설(사우나 등) 이용, 범칙금, 주류/담배, 기타 회식비 불인정
- 소품의 경우 대여를 원칙으로 하나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구매 시 실제 구매한 소품 등을 활용하여 현장 스틸컷 또는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
- 인터넷 결제 시(쿠팡, 11번가 등 쇼핑몰 구입) 카드결제 필수(구매내역서 첨부)

※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(예시)

사업비	수수료	공급가액	부가가치세
3천만 원 미만	282,000원	256,364원	25,636원
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	336,000원	305,455원	30,545원
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	365,000원	331,818원	33,182원
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	505,000원	459,091원	45,909원
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	547,000원	497,273원	49,727원
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	590,000원	536,364원	53,636원
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	632,000원	574,545원	57,455원
9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	674,000원	612,727원	61,273원
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	848,000원	770,909원	77,091원